

2023-2학기 창업학점 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가. 개요 : 학생이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창업동아리)과 창업을 하고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이 필요하여 해당 학기동안 활발한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창업과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나. 학점인정기준

구분	교과명	이수구분	학점	이수학점	실습기간	성적평가	비고
창업실습	창업실습 I	교양선택	3학점	3~6학점	과목당(3학점) 최소 160시간	P or F	학기제
	창업실습 II		3학점				
창업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 I	교양선택 전공선택	3학점	3~12학점			
	창업현장실습 II		3학점				
	창업현장실습 III		3학점				
	창업현장실습 IV		3학점				

다.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1학년 2학기부터) ·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창업강좌를 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자 · 대학에서 인정하는 창업동아리 소속(3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아리 참여 학생)
창업현장실습	<p><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이며, 예비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창업을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2학년 1학기부터) · 창업 강좌 4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연 매출 1천만원 이상인 자(신청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을 한 자) ※ 단, 위원회를 통한 자격심사 및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자로 당해 학기에 창업이 예정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가능 ·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원칙으로 함. ※ 전공분야 이외의 창업분야는 '학과' 및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이 가능하며, 업종은 '창업학점인정제 운영규정' [붙임 4]에 의거 불인정 창업업종은 인정불가

라. 창업학점인정제 신청 및 접수

*창업실습 교과목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중복해서 신청불가

1) 신청기간 : 2023. 08. 09.(수) ~ 08. 23.(수)

2)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

① 창업지원단 공용메일 start_up@hnu.kr 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② 창업지원단 사무실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창업실습	· 붙임2. 창업실습 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창업 현장실습	· 붙임3.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각 1부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붙임4. 불인정 창업 업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요망

*요건 검토가 완료되어 확정된 학생들은 향후 수강신청을 일괄로 진행해드리오니 3~6학점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창업동아리 소속은 수혜/비수혜 포함입니다.

마.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창업실습	· 창업실습 주차별 활동일지(과제로 출석체크), 월별 활동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등 · 시제품, 내·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
창업 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 창업현장실습 주차별 활동일지(과제로 출석체크), 월별 활동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등

불인정 창업 업종

순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2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